

의안번호	제 58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발 의 자	정상교 의원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17일

#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(정상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5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17일  
발 의 자 : 정상교 의원  
찬 성 자 : 박성원, 최경천, 김국기,  
김영주, 이수완, 임동현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-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심화·확대하며,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이 절실함.
- 이에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독도교육 강화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마. 추진 사업(안 제5조)
- 바. 독도교육주간 지정·운영(안 제6조)
- 사. 지속 가능한 독도관련 홍보 체계화(안 제7조)
- 아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-91호

(2020. 11. 11. ~ 2020. 11. 15.)

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2. “교직원”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(이하 “교육행정기관”이라 한다)과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 수립 등)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추진목표 및 방향
  2. 독도교육 운영 방안

3.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
4.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사업)**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독도 관련 체험교육 운영
2. 독도교육프로그램 연구·개발·보급
3. 독도교육 관련 교사 연구회 운영
4. 독도 관련 행사 개최
5. 독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
6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업

**제6조(독도교육주간 운영)**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의 날(10월 25일)을 기념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홍보)** ① 교육감은 생활 속 독도 사랑 실천을 촉진하고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도 홍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독도관련 홍보콘텐츠를 개발·활용하여 독도 관련 홍보가 일상적·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
자치단체 및 유관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3. 4] [법률 제16682호, 2019. 12. 3, 일부개정]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教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## 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19. 12. 3.] [법률 제16672호, 2019. 12. 3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## 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0. 3. 1.] [법률 제16875호, 2020. 1. 2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

#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며,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도 교육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